

인천지방법원 2015. 10. 2 선고 2015가단2476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10. 2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 인천 부평구 D대 78.8㎡ 중 16708/23765 지분에 관하여 2005. 11. 18. 강제조정을
원인으로 한,

나. 피고 C은 위 가항 부동산 중 455.5/23765 지분에 관하여 위 가항 강제조정을 원인으로 한
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청구원인 제3항상 종전 사건 조정예 갈음하는 결정이
있을 후 E 앞으로의 지분 이전에 따라 피고 B 지분 변동이 있었다는 주장 부분은 청구취지 기재에
비추어 착오 주장으로 보인다)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김희수

별지